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사법보좌관 업무 확대 등〉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569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4  |
| 1. 사법보좌관 제도 개요 .....      | 4  |
| 2. 개정안 검토 .....           | 11 |
| 3. 토론 - 추가 개정 검토 사항 ..... | 36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4. 23.
3. 회 부 일 : 2026. 4. 2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 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보좌관이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수행하면서도 해당 직책 명에서 ‘보좌’라고 칭하고 있어, 직책명이 그 업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아울러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를 당초 제도 시행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외에, 법원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성이 두드러지는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성년후견 사무의 감독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사법 공무원 직역에 대

한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 주요내용

- 가.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목 및 각 항 본문).
- 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소송비용의 부담절차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1호).
- 다. 재산명시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신청·변경·취소 등의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2호).
- 라. 실종의 선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4호)
- 마.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로 확대(안 제54조제2항제5호).
- 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6호 신설).
-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7호 신설).

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8호 신설).

자.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9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사법보좌관 제도 개요

##### 가. 의의

- 사법보좌관 제도는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독일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모델로 하여 2005년 7월에 도입되었음.

##### 나. 현황

-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며,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 범위 내<sup>1)</sup>의 실무교육(참고자료 1)을 거친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함.

2026년 8월 현재 200명의 사법보좌관이 각급 법원에 배치(참고자료

---

1) 2026년도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기간 (2026. 1. 2. ~ 2026. 6. 12.)

2)되어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과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다. 관련 규정

- 사법보좌관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와 「사법보좌관규칙」(대법원규칙 제325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히, 법 제54조제2항은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참고자료 3).

법원조직법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

| 일 자                                                       | 교 육 내 용                                              |
|-----------------------------------------------------------|------------------------------------------------------|
| 2026. 1. 2.<br>2026. 3. 3.<br>2026. 4. 27.<br>2026. 5. 4. | 전반기 원내교육 시작<br>실체법 평가 시작<br>집행법 평가 시작<br>전반기 원내교육 종료 |
| 2026. 5. 6.<br>2026. 5. 29.                               | 원외 실무교육 시작<br>원외 실무교육 종료                             |
| 2026. 6. 1.<br>2026. 6. 12.                               | 후반기 원내교육 시작<br>수료                                    |

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라. 제도 평가 및 업무 확대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본안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500건 내외로 다른주요국의 법관 1인당 사건 수<sup>2)</sup>에 비하여 많고,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 건수도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법관 1인당 사건 수와 관련하여, 미국은 366.86건, 독일은 89.6건, 프랑스는 196.5건, 일본은 151.8건임(자료 : 법원행정처)

### < 법관 1인당 처리건수(본안사건) >

| 구분<br>연도별 | 대법원  |                | 고등법원 |                | 지방법원  |                |
|-----------|------|----------------|------|----------------|-------|----------------|
|           | 가동법관 | 법관 1인당<br>처리건수 | 가동법관 | 법관 1인당<br>처리건수 | 가동법관  | 법관 1인당<br>처리건수 |
| 2021년     | 12   | 3,665.0        | 336  | 98.6           | 2,277 | 555.2          |
| 2022년     | 12   | 4,038.3        | 341  | 95.7           | 2,313 | 503.4          |
| 2023년     | 12   | 3,305.2        | 343  | 98.9           | 2,368 | 495.1          |
| 2024년     | 12   | 4,579.3        | 338  | 106.8          | 2,386 | 499.9          |
| 2025년     | 12   | 4,082.5        | 341  | 115.5          | 2,411 | 496.3          |

-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보좌관이 약 250만 건 상당의 사건을 담당함으로써 법관은 복잡한 사실관계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본안사건 등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음. 따라서 사법보좌관 제도는 단순히 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법원 내 인력을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전체적인 사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법보좌관 담당 사건의 처리 건수 및 불복률>

| 사건<br>종류                 |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
|                          | 처리<br>건수  | 불복<br>건수 | 불복률   | 처리<br>건수  | 불복<br>건수 | 불복률   | 처리<br>건수  | 불복<br>건수 | 불복률   |
| 경매<br>(개시결정에<br>대한 이의)   | 117,233   | 770      | 0.7%  | 115,648   | 697      | 0.6%  | 97,070    | 636      | 0.7%  |
| 채권 등 집행                  | 1,038,920 | 2,456    | 0.2%  | 1,054,125 | 1,392    | 0.1%  | 1,029,889 | 1,347    | 0.1%  |
| 배당사건<br>(채권배당 및<br>경매배당) | 78,583    | 1,985    | 2.5%  | 68,706    | 2,058    | 3.0%  | 55,626    | 2,019    | 3.6%  |
| 독촉<br>(전자,종이)            | 1,191,102 | 97,329   | 8.17% | 1,213,006 | 97,503   | 8.04% | 1,215,655 | 95,085   | 7.82% |
| 집행비용액<br>확정              | 902       | 76       | 8.4%  | 845       | 71       | 8.4%  | 724       | 56       | 7.7%  |
| 소송비용액<br>확정              | 59,818    | 1601     | 2.68% | 54,975    | 1472     | 2.68% | 51,801    | 1,385    | 2.67% |
| 임차권등기                    | 39,903    | 24       | 0.06% | 59,457    | 22       | 0.04% | 53,962    | 23       | 0.04% |
| 합계                       | 2,526,461 | 104,241  | 4.13% | 2,566,762 | 103,215  | 4.02% | 2,504,727 | 100,551  | 4.01% |
| 합계<br>(독촉 제외)            | 1,335,359 | 6,912    | 0.52% | 1,353,756 | 5,712    | 0.42% | 1,289,072 | 5,466    | 0.42% |

- 한편,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률은 독촉사건을 제외할 경우 약 0.4~0.5%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독촉사건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사법보좌관의 판단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나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투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

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사법보좌관에게 일정한 사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실적과 낮은 불복률, 그리고 법관에 의한 사후적 통제 절차 등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되었으며 현재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정형화되어 있고,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명확하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업무의 경우에는 법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기보다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 이처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성격과 법관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사법보좌관 업무의 정형성, 판단의 객관성,

사실관계의 복잡성, 불복절차의 실효성 및 법관에 의한 사후적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

## 2. 개정안 검토

- 개정안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소송비용 부담절차 및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집행비용 부담절차, ② 제소전화해절차, ③ 재산 명시절차, ④ 가압류·가처분의 신청·변경·취소 등의 절차 진행 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⑤ 실종의 선고 및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⑦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 ⑧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 회생절차, ⑨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 ⑩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 송달절차 등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 현행                                                                                                                                             | 개정안                                                                                                                        |
|------------------------------------------------------------------------------------------------------------------------------------------------|----------------------------------------------------------------------------------------------------------------------------|
| 제54조(사법보좌관) ① (생략)<br>② (생략)<br>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 제54조(사법심사관) ① (생략)<br>② (생략)<br>1. -----<br>-----<br>-----<br>-----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소송비용 부담절차, 목적을 |

|                                                                                                                                                                                                                                                                                            |                                                                                                                                                                                                                                                                   |
|--------------------------------------------------------------------------------------------------------------------------------------------------------------------------------------------------------------------------------------------------------------------------------------------|-------------------------------------------------------------------------------------------------------------------------------------------------------------------------------------------------------------------------------------------------------------------|
| <p>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p>                                                                                                                                                                                                                                                                        | <p>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br/>하는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br/>전화해절차, -----<br/>-----<br/>-----<br/>-----</p>                                                                                                                                                                        |
| <p>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br/>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br/>른 <u>집행문 부여명령절차</u>, 채무<br/>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br/>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br/>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br/>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br/>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br/>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br/>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br/>매절차, 제소명령절차, <u>가압류<br/>·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u><br/>에서의 법원의 사무</p> | <p>2. -----<br/>-----<br/>-----<u>집행문 부여명령절차</u>,<br/><u>재산명시절차</u>, -----<br/>-----<br/>-----<br/>-----<br/>-----<br/>-----<br/>-----<br/>-----, <u>가압류·<br/>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u>,<br/><u>가압류·가처분의 신청·변경<br/>·취소 등의 절차 진행시 제공<br/>된 담보의 취소절차</u>-----<br/>-----</p> |
| <p>3. (생략)</p>                                                                                                                                                                                                                                                                             | <p>3. (현행과 같음)</p>                                                                                                                                                                                                                                                |
| <p>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br/>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br/>한정승인취소·<u>포기취소 신고의<br/>수리절차</u>에서의 가정법원의 사</p>                                                                                                                                                                                               | <p>4. -----<br/>-----<br/>-----<u>포기취소 신고의 수<br/>리, 실종의 선고, 성년후견사무</u></p>                                                                                                                                                                                        |

|                                                                                                                                                                                                          |                                                                                                                                                                                                                                                                                                                                 |
|----------------------------------------------------------------------------------------------------------------------------------------------------------------------------------------------------------|---------------------------------------------------------------------------------------------------------------------------------------------------------------------------------------------------------------------------------------------------------------------------------------------------------------------------------|
| <p>무</p> <p>5. <u>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u></p> <p><u>&lt;신 설&gt;</u></p><br><p><u>&lt;신 설&gt;</u></p><br><p><u>&lt;신 설&gt;</u></p><br><p><u>&lt;신 설&gt;</u></p> | <p><u>의 감독절차-----</u></p> <p>5.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u></p><br><p>6. <u>「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u></p> <p>7. <u>「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u></p> <p>8. <u>「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u></p> <p>9. <u>「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u></p> |
|----------------------------------------------------------------------------------------------------------------------------------------------------------------------------------------------------------|---------------------------------------------------------------------------------------------------------------------------------------------------------------------------------------------------------------------------------------------------------------------------------------------------------------------------------|

## 가. 소송비용 부담절차 등 추가(안 제54조제2항제1호)

- 안 제54조제2항제1호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소송비용 부담절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화해절차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 < 안 제54조제2항제1호 관련 접수 건수 >

(단위 : 건)

| 년도   | 접수        |           |         |        |
|------|-----------|-----------|---------|--------|
|      | 소송비용 부담절차 | 집행비용 부담절차 | 제소전화해절차 | 합계     |
| 2021 | 54,025    | 4         | 2,921   | 56,950 |
| 2022 | 56,490    | 1         | 3,487   | 59,978 |
| 2023 | 61,559    | 1         | 3,010   | 64,570 |
| 2024 | 65,287    | 0         | 3,782   | 69,069 |
| 2025 | 68,609    | 0         | 3,920   | 72,529 |

자료 : 법원행정처

- 민사소송을 종결할 경우 소송비용을 누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소송비용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을 소송비용 부담재판이라 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본안판결과 동시에 이루어짐.

승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받는 절차를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라 하고, 승소자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행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함.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절차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소송비용 부담은 법관이 담당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사법보좌관이

수행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114조<sup>3)</sup>가 적용되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sup>4)</sup>에 하는 소송비용 부담재판은 다른 유형의 소송비용 부담재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소송비용 부담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사법보좌관에게 일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sup>5)</sup>에 하는 집행비용 부담절차도 위에서 살펴본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재판과 유사하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해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과 상대방을 소환함.

그런데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

3)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의 취하, 소의 취하간주, 항소 또는 상고의 취하, 상소의 취하간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등

5) 강제집행 신청 취하, 집행처분의 취소 등

되므로 기관력과 집행력이 인정되며,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도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sup>6)</sup>, 「민사소송법」 제386조<sup>7)</sup>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 경우 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재판은 사실관계나 분쟁이 복잡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다른 유형의 소송비용 부담재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소송비용 부담재판 및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한 번에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제소전화해절차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한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나. 재산명시절차 등 추가(안 제54조제2항제2호)

- 안 제54조제2항제2호는 재산명시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신청·변경·취소 등의 절차 진행 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를 사법보좌

---

6) 대법원 2002. 12. 6. 2002다44014

7)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관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 < 제54조제2항제2호 관련 접수 건수 >

(단위 : 건)

| 년도   | 접수      |                      |         |
|------|---------|----------------------|---------|
|      | 재산명시절차  | 가압류·가처분<br>담보제공취소 절차 | 합계      |
| 2021 | 168,342 | 43,285               | 211,627 |
| 2022 | 163,876 | 38,859               | 202,735 |
| 2023 | 163,275 | 39,764               | 203,039 |
| 2024 | 163,363 | 44,122               | 207,485 |
| 2025 | 165,252 | 42,173               | 207,425 |

자료 : 법원행정처

-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이 타당하고 판단될 경우 재산명시결정을 내리게 됨.<sup>8)</sup> 재산명시절차는 강제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쟁송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여야 함<sup>9)</sup>. 또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8) 「민사집행법」 제61조부터 제77조까지

9)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sup>10)</sup>.

즉, 재산명시절차의 경우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는 점, 감치라는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절차 및 감치재판절차까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한다면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돌할 소지가 있음.

-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sup>11)</sup>, 채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음.<sup>12)</sup>

---

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선서)**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0)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11)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담보제공자는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함<sup>13)</sup>.

가압류·가처분의 신청·변경·취소 등의 절차 진행 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담보취소의 사유는 단순·기계적 업무이며 재량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고, ② 업무의 성격상 집행의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한 점, 본안 이전의 절차로 재판청구권과는 무관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 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공탁 법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행정처는 재산명시절차는 사법보좌관의 주요 업무인 강제집행 절차에 부수하는 성격을 가지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감치재판절차 등을 제외하면 재량성이 낮아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 적당하나, 쟁송성이 강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채무자의 신체 구속을 할 수 있는 결정이 포함되는 채무자의 감치에 관한 재판을 「사법보좌관규칙」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압류·가처분 절차에서의 담보취소 사건의 경우 신청이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고, 담보사유 소멸 증명자료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제출되는 등 사안이 단순하고 부수적·공증적 성격을 지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 다. 실종 선고 등 추가(안 제54조제2항제4호)

- 안 제54조제2항제4호는 실종의 선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 < 제54조제2항제4호 관련 접수 건수 >

(단위 : 건)

| 년도   | 접수     |             |       |
|------|--------|-------------|-------|
|      | 실종신고절차 | 성년후견사무 감독절차 | 합계    |
| 2021 | 2,225  | 3,657       | 5,882 |
| 2022 | 2,153  | 3,512       | 5,665 |
| 2023 | 1,987  | 3,438       | 5,425 |
| 2024 | 2,000  | 3,436       | 5,436 |
| 2025 | 1,945  | 3,880       | 5,825 |

자료 : 법원행정처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함.<sup>14)</sup>

배우자, 상속인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부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행방불명 경위 등에 대한 사전 조사 후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거쳐

14)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실종선고를 하는 바, 그 절차에 있어서 쟁송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 성년후견 사건은 개시사건과 감독사건으로 구분하고, 감독사건은 개시사건의 확정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기본후견감독사건과 후견감독 부수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후견이 개시되면 기본후견감독사건이 직권으로 개시되고<sup>15)</sup> 일반적으로 후견감독 직권개시, 친족후견인 교육, 재산목록의 제출, 재산목록에 대한 초기후견감독,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및 정기후견감독, 후견감독 종료의 순서로 진행됨.

후견개시 및 기본후견감독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을 후견감독부수사건이라 하는데, 후견(감독)인 재선임·추가 선임·변경, 피후견인에 대한 격리 허가,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 허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 허가 사건 등이 이에 해당

---

15)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7조(후견감독)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후견이 개시되면 즉시 직권으로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

1.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확정 시
2.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3. 한정후견: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4. 특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5.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② 기본 후견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고, 법원은 해당 후견이 종료하면 심판 없이 기본 후견감독사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함16).

성년후견 사무의 감독절차에 관한 사항은 분쟁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실종선고의 경우 첨부서면과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한 사실확인에 의한 심사가 주를 이루는 업무로서 쟁송성이나 재량성이 약하고,

성년후견감독업무는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분쟁성이 낮은 업무에 속하며, 사건 특성상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후견감독 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법자원의 합리적 운영 측면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임.

---

16)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 라. 협의이혼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5호)

- 안 제54조제2항제5호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관계 없이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 < 안 제54조제2항제5호 관련 접수 건수 >

(단위 : 건)

| 년도   | 접수      |
|------|---------|
| 2021 | 107,179 |
| 2022 | 101,138 |
| 2023 | 99,229  |
| 2024 | 96,878  |
| 2025 | 92,616  |

자료 : 법원행정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의 협의 이혼 절차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확인’만이 문제되는 공증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고, 절차상 당사자의 대면성이 요구되지만 이혼 의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대면일 뿐이고 법적 공방을 요하는 이해대립이 아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되고<sup>17)</sup>, 이렇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과

함께 부부 양쪽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어 집행권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됨<sup>18)</sup>. 다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음.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sup>19)</sup>,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라는 점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근본적 대립이 없으므로 분쟁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② 양육비부담조서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법원행정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 부담조서의 경우 기판력이 없고 법원의 역할은 사실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확인에 그치고 있고 자의 복리적 관점에서 자의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권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재량성이 낮으므로

---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78조(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이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8)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19)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p. 105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함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 마. 부재선고 및 취소 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6호)

- 안 제54조제2항제6호에서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에서의 가정법원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 < 안 제54조제2항제6호 관련 접수 건수 >

(단위 : 건)

| 년도   | 접수 |
|------|----|
| 2021 | 34 |
| 2022 | 28 |
| 2023 | 18 |
| 2024 | 14 |
| 2025 | 18 |

자료 : 법원행정처

-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그 이남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임.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거쳐 부재선고를 하여야 하고<sup>20)</sup>,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부재선고의 경우 실질적인 쟁송보다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다만, 사건수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개정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는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등 간이한 절차이며 분쟁성·재량성이 낮으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 바. 개인회생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7호)

- 안 제54조제2항7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0)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재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 < 안 제54조제2항제7호 관련 접수 건수 >

(단위 : 건)

| 년도   | 접수      | 비고 |
|------|---------|----|
| 2021 | 69,982  |    |
| 2022 | 77,319  |    |
| 2023 | 97,843  |    |
| 2024 | 102,131 |    |
| 2025 | 123,801 |    |

※ 개인회생 사건의 소득구분 값은 '급여소득', '영업소득', '급여·영업소득'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급여소득'으로 입력된 사건 건수를 추출함

※ 2025년도부터 소득구분 값이 없는 사건이 대량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현상에 대한 원인을 검토 중임.

자료 : 법원행정처

-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무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으로 확실하거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중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함.
- 개인회생사건에서 법원의 사무는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개시결정, 기각결정, 취하 결정 등),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부결정(인가결정, 불인가결정

정, 인가전 폐지결정), 인가 후 폐지결정, 변제계획수정, 면책결정 등이 있음.

○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①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써 쟁송적 성격이 약한 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②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인도명령절차’, 채권집행절차에서 ‘압류범위의 변경’ 등의 절차는 법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도 사법보좌관에게 특정한 권한을 분점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 부인의 청구에 대한 재판은 실무상 활용이 거의 없지만 쟁송성 등 측면에서 시기상조이고,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실무상 활용이 거의 없지만, 민사 보전처분이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이 아니므로 시기상조<sup>21)</sup>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의 보전처분을 하였거나 동시에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sup>22)</sup> 보전처분을 법관이 담

---

21) 채무자회생법 제592조의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과는 다른 성격의 제도로서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본안사건과 별도로 독립절차로 처리되고 사건번호도 따로 부여되지만 본조의 보전처분은 해당개인회생절차의 일부로서 처리되며 해당 개인회생절차의 일부로서 처리됨(편집대표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VI), 한국사법행정학회(2021), 208.). 이를 감안하여 사법보좌관 업무에 포함시키자는 견해도 있음

22) 편집대표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VI), 한국사법행정학회(2021), 248면.

당하는 이상 포괄적 금지명령도 법관이 담당함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중지금지명령 취소·변경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중지금지명령<sup>23)</sup>에 대한 불복·구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보장 면에서 법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면책의 취소는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적 성격이 있으며, 취소여부 판단에 있어서 재량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sup>24)</sup>

## 사. 과태료 약식재판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8호)

- 안 제54조제2항제8호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

23) 편집대표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VI), 한국사법행정학회(2021), 239면: “중지·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항고(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24) 법원행정처도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임.

## <안 제54조제2항제8호 관련 접수 건수>

(단위 : 건)

| 년도   | 접수     |
|------|--------|
| 2021 | 73,543 |
| 2022 | 76,314 |
| 2023 | 76,310 |
| 2024 | 80,245 |
| 2025 | 78,293 |

자료 : 법원행정처

-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과태료 사건은 법원이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및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것을 약식재판<sup>25)</sup>이라 하는데, 과태료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서면심리에 의함.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에서의 법원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법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공법상의 의무 이행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행정공무원이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법보

<sup>25)</sup>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의 경우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sup>26)</sup>

#### 아. 공시송달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9호)

- 안 제54조제2항제9호는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에  
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 <안 제54조제2항제9호 사건 관련 접수 건수>

(단위 : 건)

| 년도   | 접수      |
|------|---------|
| 2021 | 113,788 |
| 2022 | 50,466  |
| 2023 | 49,763  |
| 2024 | 48,154  |
| 2025 | 63,694  |

자료 : 법원행정처

26) 법원행정처도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임.

- 「민법」 제113조<sup>27)</sup>에 따르면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195조에서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사표시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이를 수행하고 있음.

공시송달 명령의 업무는 쟁송성이 거의 없는 분야이고,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sup>28)</sup> 이와 유사한 업무인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제출된 신청서에 의하여 송달을 진행하고 송달 결과에 따라 공시송달 요건을 판단하는 등 분쟁성이 거의 없고, 사법

27)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8)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업무범위)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좌관이 독촉절차에서 이미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찬성하는 의견임.

#### 자. ‘사법보좌관’ 명칭 변경(안 제54조)

- 개정안은 ‘사법보좌관’이라는 명칭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법보좌관은 판사를 단순히 돕는 보조자의 역할이 아닌 업무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대외적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이에 대하여 ① ‘사법보좌관’이라는 명칭은 독일에서 시행 중이던 ‘Rechtspfleger’를 번역한 용어로서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에 있어 외부적인 반발을 줄이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하였고 20년 넘게 사용된 명칭으로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정착하였으며, ②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여 법관 이외에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고, 현행법 제54조제3항<sup>29)</sup>에 따라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법보좌관’이라는 직명을 변경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

29) 「법원조직법」 제54조(사법보좌관)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① ‘사법보좌관’ 명칭이 최초 도입된 1994년에는 사법보좌관이 자료수집, 조사업무 등 보좌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후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비송영역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보좌’라는 명칭이 현재의 업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② ‘보좌관’ 명칭이 업무영역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잦고,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고려할 때 명칭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점, ③ ‘사법보좌관’보다는 ‘사법심사관’이 업무영역과 직무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sup>30)</sup>

---

30) 법원행정처도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입장임

### 3. 토론 - 추가 개정 검토 사항

#### 가.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본문 검토

- 법 제54조제2항본문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을 각 호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법보좌관 규칙」 제2조는 사법보좌관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sup>31)</sup>.

제54조(사법보좌관)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5. (생략)

- 헌법 제37조제2항<sup>32)</sup>은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률유보 원칙). 또한, 법률이 위임한 하위법령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일반 법률에 비하여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기준이 엄격하게 요구되며, 수범자가 법률 규정을 보고 위임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임<sup>33)</sup>.

31) 예를 들어, 법 제54조제2항제2호는 사법보좌관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 제2조제1항7호는 강제경매절차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32) 헌법 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3) 헌재 2016. 11. 24. 2014헌가6

- 그런데, 법 제54조2항이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를 감안할 때, 사법보좌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법 제54조제2항본문은 정형적·반복적·비송적인 업무 중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하여 사법보좌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나. 「법원조직법」 제54조제3항 검토

- 법 제54조제3항은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확대되는 경우 법관의 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제54조(사법보좌관)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법관의 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보좌관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소속법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하고, 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그러나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의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관의 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법관의 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감독자인 법관의 책임과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1

## 참고자료 1 사법보좌관 교육과목

| 과 목    |        | 2025년도                                                  | 2026년도                                                  |
|--------|--------|---------------------------------------------------------|---------------------------------------------------------|
| 법률이론교육 |        | 254시간                                                   | 254시간                                                   |
| 원외실무교육 |        | 152시간                                                   | 144시간                                                   |
| 교양과목   |        | 22시간                                                    | 18시간                                                    |
| 기타     | 원내실무교육 | 58시간<br>(기록연계교육 22시간 이론교육심화 36시간)                       | 56시간<br>(기록연계교육 22시간 이론교육심화 34시간)                       |
|        | 그 외    | 204시간<br>(특별지도 16시간, 자율학습 59시간, 자료검토 12시간, 평가준비 30시간 등) | 216시간<br>(특별지도 16시간, 자율학습 59시간, 자료검토 12시간, 평가준비 30시간 등) |
|        | 합 계    | 262시간                                                   | 272시간                                                   |
| 총 계    |        | 690시간                                                   | 688시간                                                   |

### ▶ 법률이론강의

- 절차법: 민사소송법(독촉절차 포함), 민사집행법, 도산법 등
- 실체법: 민법(친족상속편 포함), 어음·수표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 ▶ 실무교육

- 원내실무교육: 기록연계교육(부동산집행, 채권배당 등 실제 기록을 활용한 교육)과 실무관련 이론교육 심화과정(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민사집행·민사신청 등 관련 주제 강의)으로 편성
- 원외실무교육: 각급 법원에서 지도관의 지도하에 4주간 민사집행, 민사신청, 독촉 등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 기타실무교육: 전자소송실습, 실무수습세미나 등

### ▶ 교양과목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특강

## 참고자료 2

## 사법보좌관 배치 및 직급별 현황

### 1. 배치 현황

(2026. 7. 1.자 기준)

| 연번 | 법원       | 인원(명) |
|----|----------|-------|
| 1  | 법원행정처    | 7     |
| 2  | 서울중앙지방법원 | 13    |
| 3  | 서울가정법원   | 1     |
| 4  | 서울동부지방법원 | 5     |
| 5  | 서울남부지방법원 | 8     |
| 6  | 서울북부지방법원 | 6     |
| 7  | 서울서부지방법원 | 4     |
| 8  | 의정부지방법원  | 13    |
| 9  | 인천지방법원   | 16    |
| 10 | 인천가정법원   | 1     |
| 11 | 수원지방법원   | 27    |
| 12 | 춘천지방법원   | 8     |
| 13 | 대전지방법원   | 14    |
| 14 | 청주지방법원   | 7     |
| 15 | 대구지방법원   | 18    |
| 16 | 부산지방법원   | 11    |
| 17 | 부산가정법원   | 1     |
| 18 | 울산지방법원   | 5     |
| 19 | 창원지방법원   | 12    |
| 20 | 광주지방법원   | 12    |
| 21 | 전주지방법원   | 7     |
| 22 | 제주지방법원   | 4     |
| 합계 |          | 200   |

### 2. 직급별 현황

| 직급     | 인원(명) | 비고 |
|--------|-------|----|
| 법원이사관  | 2     |    |
| 법원부이사관 | 7     |    |
| 법원서기관  | 191   |    |
| 합계     | 200   |    |

자료 : 법원행정처

##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업무범위)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 3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 가.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나. 삭제
8. 「민사집행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 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

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나, 삭제

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동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제7호 가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8호 내지 제10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9호 가목 및 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3.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1호 및 제12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7호 가목 및 제9호 가목·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4. 제7호 내지 제9호·제10의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목의 사무

가.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

나. 「민사집행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

다. 「민사집행법」 제5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라. 「민사집행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마. 「민사집행법」 제266조(동법 제270조·제272조 및 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일시유지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

16. 「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8.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2)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19.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민법 제836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와 관련된 사무를 제외함)
2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